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47	안규백의원	2024.11.29.	2025.2.11.
	2207023	강선영의원	2024.12.27.	
	2207239	유용원의원	2025.1. 6.	
	2207377	강대식의원	2025.1. 9.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현행의 수기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나.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다.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으로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2항”을 “제31조의2제3항”으로, “제81조”를 “제81조, 제82조의3”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령으로 정하는 사람 <단서
신설>

3. (생 략)

② ~ ⑬ (생 략)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생 략)

<신 설>

----- . 다만, 제8
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
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
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31조의2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u>
---------------------------	---